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0 선고 2021가단31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철의

피 고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경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도로 50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6. 17. 접수 제187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년 초경 피고에게 강릉시 D 잡종지, E 임야 등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E 임야 중 사업장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여 C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발허가'라 한다).

나. C은 2012. 4. 6. 강릉시 E 임야에서 B 임야 509㎡(이후 도로로 지목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F조합 등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C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하라고 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11. 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2013. 4. 30. 및 2013. 5. 16. 이 사건 개발허가의 부관에 따라 기부채납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C이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사권을 말소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 기부채납 및 사용승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C은 2013. 6. 11.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한 후, 2013. 6. 13.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같은 날짜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188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7. 9. 5.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2017. 12. 7.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4. 6.경 발생한 강릉시 E 토지 일부의 붕괴 사고를 빌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지속적으로 회유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5. 말경부터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개발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를 숨긴 채 기부채납 독촉만을 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개발허가 등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기부채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는 사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인바(더욱이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까지 펼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행 소송의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격방법을 재차 이 사건에 제출하여 선행 소송과 다른 판단을 구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 법원으로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